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합570115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3. C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15. 4. 9.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879,758원 및 그 중 155,490,5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9.부터, 86,253,081원에 대하여는 2014. 9. 24.부터 각 2014.

12. 2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재판장 판사 이정호, 판사 박나리, 판사 윤동현

청 구 원 인

1. 신용보증

가. 원고는 2009. 5. 2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함)와 사이에 신용보증기간은 같은날로부터 2010. 5. 20.까지, 위 보증기간동안 신용보증원금은 금 4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 주안공단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대출금 5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0. 5. 20., 보증금액 40,000,000원(대출예정금액 50,000,000원에 대한 보증비율 80%해당 금액), 보증번호 D 피보증인 피고회사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피고회사는 2009. 5. 22. 위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금 5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후 원고는 피고회사의 위 보증기한 연장 요청에 따라

- ① 2010. 4. 30. 당초의 보증기한 2010. 5. 20.을 2011. 5. 20.로,
- ② 2011. 5. 2. 위 보증기한을 2012. 5. 18.로,
- ③ 2012. 4. 27. 위 보증기한을 2013. 4. 30.로,
- ④ 2013. 4. 10. 위 보증기한을 2014. 2. 14.로,
- ⑤ 2014. 2. 11. 위 보증기한을 2015. 2. 13.로

각 변경하여 주었습니다.

나. 원고는 2009. 4. 24. 피고회사와 사이에 거래기간 2009. 4. 24.부터 2011. 4.

23.까지, 거래한도금액 20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1) 원고는 위 신용보증한도거래약정에 따라 2009. 5. 4. 피고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 주안공단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한부수입신용장발행 지급보증금 USD 121,200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0. 5. 3., 보증금액 USD 103,020(지급보증예정금액 USD 121,200에 대한 보증비율 85%해당 금액), 보증번호 E 피보증인 피고회사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피고회사는 2009. 5. 4. 위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금 USD 121,200의 기한부수입신용장발행 지급보증을 받았습니다.

그후 원고는 피고회사의 위 보증기한 연장 요청에 따라

- ① 2010. 4. 30. 당초의 보증기한 2010. 5. 3.을 2011. 5. 3.로,
 - ② 2011. 5. 2. 위 보증기한을 2012. 5. 3.로,
 - ③ 2012. 4. 27. 위 보증기한을 2013. 4. 30.로,
 - ④ 2013. 4. 10. 위 보증기한을 2014. 2. 14.로,
 - ⑤ 2014. 2. 11. 위 보증기한을 2015. 2. 13.로
- 각 변경하여 주었습니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한도거래약정에 따라 2010. 2. 18. 피고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 주안공단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대출금 3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1. 2. 17., 보증금액 24,000,000 원(대출예정금액 30,000,000원에 대한 보증비율 80%해당 금액), 보증번호 F 피보증인 피고회사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피고회사는 2010. 2. 22. 위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금 3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후 원고는 피고회사의 위 보증기한 연장 요청에 따라

- ① 2011. 2. 16. 당초의 보증기한 2011. 2. 17.을 2012. 2. 17.로,
 - ② 2012. 2. 15. 위 보증기한을 2013. 2. 15.로,
 - ③ 2013. 2. 14. 위 보증기한을 2014. 2. 14.로,
 - ④ 2014. 2. 11. 위 보증기한을 2015. 2. 13.로
- 각 변경하여 주었습니다.

다. 원고는 2011. 5. 2. 피고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기간은 같은날로부터 2012.

4. 30.까지, 위 보증기간동안 신용보증원금은 금 59,5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회사가 소외 한국씨티은행 신포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B2B구매자금대출금 7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2. 4. 30., 보증금액 59,500,000원(대출예정금액 70,000,000원에 대한 보증비율 85%해당 금액), 보증번호 G 피보증인 피고회사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피고회사는 2011. 5. 9. 위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금 70,000,000원의 B2B구매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후 원고는 피고회사의 위 보증기한 연장 요청에 따라

- ① 2012. 4. 27. 당초의 보증기한 2012. 4. 30.을 2013. 4. 30.로,
 - ② 2013. 3. 26. 위 보증기한을 2014. 3. 28.로,
 - ③ 2014. 3. 25. 위 보증기한을 2015. 3. 27.로
- 각 변경하여 주었습니다.

라. 원고는 2011. 5. 2. 피고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기간은 같은날로부터 2012.

4. 30.까지, 위 보증기간동안 신용보증원금은 금 25,5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회사가 소외 한국씨티은행 신포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일반대출/기업운전자금대출금 3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2. 4. 30., 보증금액 25,500,000원(대출예정금액 30,000,000원에 대한 보증비율 85%해당 금액), 보증번호 H 피보증인 피고회사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피고회사는 2011. 5. 9. 위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금 30,000,000원의 일반대출/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후 원고는 피고회사의 위 보증기한 연장 요청에 따라

- ① 2012. 4. 27. 당초의 보증기한 2012. 4. 30.을 2013. 4. 30.로,
- ② 2013. 3. 26. 위 보증기한을 2014. 3. 28.로,
- ③ 2014. 3. 25. 위 보증기한을 2015. 3. 27로

각 변경하여 주었습니다.

마. 한편 피고 B, 피고 C은 원고와 피고회사간의 위 제1의 가.나.(1),(2).

다.라.항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당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2. 지연손해금 및 부채채무등

피고회사는 원고와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신용보증을 하는데 대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보증료를 지급하고, 원고가 피보증인인 피고회사의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변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동 지연손해금률이 변동된 때에는 그 변동된 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하지 아니하면 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원고의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구상권 행사 또는 보전을 위하여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모든 부대채무금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의 비율입니다.

3. 대위변제와 구상채권의 발생

가. 대위변제

보증의뢰인인 피고회사는 2014. 6. 30. 폐업으로 인하여 위 제1의 가. 나.(1),(2).다.라.항 기재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뒤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대출은행등의 청구에 따라 피고회사를 대위하여

① 제1의 가.항 기재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014. 9. 19. 소외 중소기업은행에게 원금 40,000,000원과 이자 708,498원을 합한 금 40,708,498원을,

② 제1의 나.(1)항 기재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2014. 9. 19. 소외 중소기업은행에게 원금 95,429,494원과 이자 749,314원을 합한 금 96,178,808원을,

③ 제1의 나.(2)항 기재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2014. 9. 19. 소외 중소기업은행에게 원금 24,000,000원과 이자 434,028원을
합한 금 24,434,028원을,

④ 제1의 다.항 기재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2014. 9. 24. 소외 한국씨티은행에게 원금 59,500,000원과 이자 1,100,790원을
합한 금 60,600,790원을,

⑤ 제1의 라.항 기재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2014. 9. 24. 소외 한국씨티은행에게 원금 25,500,000원과 이자 368,701원을
합한 금 25,868,701원을

각 변제하여 보증채무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나. 대위변제금 일부 회수와 확정지연손해금

그후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 위 제1의 나.(1)항 기재 대출금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 96,178,808원에 대하여

2014. 11. 28. 금 5,830,834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중의 원금 일부에 변제
충당함으로써 그 대위변제금 잔액은 금 90,347,974원(96,178,808원 - 5,830,834
원)이 남게 되었고,

원고가 위 금원을 회수하는동안 그 대위변제금으로부터 위 회수일까지 위 회수
금액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으로서 금 136,106원(5,830,834원 x 12% x
71/365(2014. 9. 19. - 2014. 11. 28.))이 발생하였습니다.

㉡ 위 제1의 다.항 기재 대출금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 60,600,790원에 대하여는

2014. 9. 24. 금 216,41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중의 원금 일부에 변제충

당함으로써 그 대위변제금 잔액은 금 60,384,380원(60,600,790원 - 216,410원)이 남게 되었고,
 원고가 위 금원을 회수하는동안 그 대위변제일로부터 위 회수일까지 위 회수 금액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으로서 금 71원(216,410원 x 12% x 1/365(2014. 9. 24. - 2014. 9. 24.))이 발생하였습니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회사, 피고 B 피고 C 은 제1의 가.나.(1),(2).다.라.항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의뢰인 및 연대보증인들로서 연대하여 위 제3의 다.항 기재의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금 241,743,581원(①40,708,498원 + ②90,347,974원 + ③24,434,028원 + ④60,384,380원 + ⑤25,868,701원)과 확정지연손해금 합계금 136,177원(㉠136,106원 + ㉡71원)을 합한 금 241,879,758원(241,743,581원 + 136,177원) 및 그 중
 위 ①,②,③의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금 155,490,5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4. 9. 19.부터,
 위 ④,⑤의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금 86,253,081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4. 9.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